

의안번호	2216539
의 퇴 인	차지호의원
회 답 일	2026. 6. 15.
추계번호	26B0680

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)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·지원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(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·지원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피해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피해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, 조직 규모 및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피해신고센터 설립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1)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·운영 중이며, 전국 17개 시·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·운영 중에 있음

1) 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.

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·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
2.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·홍보
3.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·컨설팅
4.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·교류
5.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6.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

7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

③ 시·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 10. 1.>

1.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·상담 및 사후관리
2.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
3.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·홍보
4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